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83 발 의 년 월 일:2025년 08월 11일 발 의 자:박 석 의원(1명) 찬 성 자:강석주, 김경후,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서상열, 소영철, 신복자, 왕정순, 유만희,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최민규, 최유희, 허 훈, 황철규 의원(25명)

1. 제안이유

-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 정보취급자'의 정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시 대응 절차 및 통지·신고 시한 등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정비함.
-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 부서장을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 자'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 담당 업무를 규정함으 로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일선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및 유출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개인정보취급자'의 정의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 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제6호).
- 나. 각 부서의 장을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담당 업무를 규정함(안 제5조제2항부터 제5조제4항까지).
- 다.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등에 따른 정보주체 통지 시한을 72시간 이내로 명시함 (안 제7조제1항).

- 라.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등에 따른 신고 시한을 72시간 이내로 명시함 (안 제7조제3항).
- 마. 법률에 근거가 없는 가명정보 전담 결합기관 지정 근거 조항을 삭제함(안 제13조의2).
- 바. 기타 정비가 필요한 자구를 수정함(안 제4조의2, 안 제5조, 안 제7조, 안제12조의1,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 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을 말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포함 하여 수립하며,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를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제1호"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각 부서의 분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을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의 '해당 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과장 등을 의미한다.
- ④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 2.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관련내용 보고
-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 없이"를 "72시간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 등 법 시행령 제40조에 해당할 때 에는"으로, "지체 없이"를 "72시간 이내에"로 한다.

제12조의1을 제12조의2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 정보취급자"라 한다)"를 "개인정보취급자"로 한다. 제13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
	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
	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을 말한다.
제4조의2(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제4조의2(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① (생 략)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은 <u>자치구,</u> 투자출	② 서울특별시
연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 계	
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서울	
<u>특별시</u>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
정) 시장은 법 제31조 및 <u>법 시</u>	정) <u>①</u> <u>법 시</u>
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u>행령 제32조제3항제1호</u>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	
보 보호담당자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u><신 설></u>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
	보 보호책임자가 직무를 효율적

현	행		개 정 안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
			보를 취급하는 각 부서의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임명하
			여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않
			을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을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u><신 설></u>			③ 제2항의 '해당 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
			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
			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과장
			등을 의미한다.
<u><신 설></u>			④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
			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2.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관련
			내용 보고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개인
			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는
			<u>사항</u>
제7조(개인정보 유	출에 따른	대	제7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

현 행	개 정 안
책) ① 시장은 실제로 개인정보	책) ①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72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	
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1천 명 이상의 개인	3
정보가 유출된 <u>경우에는</u> 서면	<u>경우 등 법 시행</u>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	령 제40조에 해당할 때에는
이지에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	
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72시간 이내에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	
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u>제12조의1</u> (소위원회) ① ~ ⑥ (생	<u>제12조의2</u> (소위원회) ① ~ ⑥ (현
략)	행과 같음)
제13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	제13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
독) ① 시장은 개인정보가 안전	독) ①
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u>지휘·</u>	<u>개인정</u>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	<u>보취급자</u>
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현 행	개 정 안
<u>한다)</u> 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13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	<u><</u> 삭 제>
및 안전한 활용을 통한 시정발	
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회 심의를 거쳐 법 제28조의3의	
전담 결합전문기관을 정할 수	
<u>있다.</u>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시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취급자'의 정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시 대응절차 및 통지·신고시한 등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위해 관련 조항(제2조제6호,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제13조 등)의 자구를 수정하였고,
-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각 부서장을 '분임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 담당업무를 규정(제5조제2항부터 제5조제4항까지)함으로써 일선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및 유출 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김진형

2 02-2180-7954

e-mail: kjh081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